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I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 보도와 초상권 침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박 모 씨가 자신이 경찰을 폭행하려 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현장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은 지난 2009년 6월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회 주최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이 수시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한 군중들 속에서 원고가 의경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에 원고는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

로의 횡단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으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건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에 참여한 것과 그 과정에서 의경들과 대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원고로서는 내심 경찰을 폭행할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환으로 사진에 포착된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사나 함께 게재된 이 사건 사진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보도하고자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초상권 침해 판단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소송에 앞서 원고는 2009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60, 261)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담당 중재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중재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법원에 자동소제기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2010. 1.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사 건 : 2009가합81994 정정보도

원 고 : 박 ○ ○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변 론 종 결 : 2009. 12. 16.

판 결 선 고 : 2010. 1. 27.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주식회사동아일보는는 같은 피고가 발행하는 동아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동아닷컴(www.donga.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정정보도청구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이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 청구문을 게재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동아일보 2009. 6. 11. 종합 A8면에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이라 한다)도 같은 날 위 회사가 운영하는 동아닷컴(www.donga.com)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는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라는 제목 아래 2009. 6. 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월 항쟁 계승·민족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고 한다)의 경과를 보도하면서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하루 중 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주최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시로 육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시청 앞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한 군중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위 사진 중앙에는 원고의 얼굴과 상체 일부가 촬영되어 있고, 여기서 원고는 마주 보고 서 있는 의경들을 향하여 오른손을 주먹 쥔 채 어깨 가까운 높이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뒤로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마치 의경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 그 후 피고 동아닷컴은 원고로부터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이 사건 기사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원고의 모습과 사진 설명, 그리고 이 사건 기사의 본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는 마치 원고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여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로의 횡단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여 경찰의 방패를 손으로 밀고 손과

주먹으로 경찰을 위협하며 시위를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범국민대회의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의 게재는 거기에 특별히 비방 목적이나 사실의 왜곡이 없는 이상 원고의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이 사건 사진 속의 원고의 모습은 마주 보고 서 있는 의경들을 향하여 오른손을 주먹 쥔 채 어깨가까운 높이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뒤로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마치 의경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범국민대회가 경찰과의 대치 아래 긴장감 속에 열려 수시로 시위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 본문이나 이 사건 사진 하단의 설명과 종합하여 보면, 더욱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인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시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로의 횡단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오후 7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된 범국민대회의 진행에 필요한 대형 스피커 등의 장비를 주최 측이 트럭에 실어 광장으로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기동경찰대 등을 동원하여 광장 남서쪽 입구에서 트럭의 진입을 차단한 채 물품 반입을 저지하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 군중들이 헬멧과 방호조끼 등을 착용한 기동경찰대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도 전면에서 기동경찰대와 대치한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시청 앞에서 대로 건너편 대한문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입구 지점으로 기동경찰대가 있는 곳과는 다소 떨어져 있고, 당시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던 의경들은 방패를 들고 있었을 뿐 정복 차림으로 인원도 10여 명에 불과하였으며, 의경들의 전후좌우로 다수의 사람들이 둘러싸다시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범국민대회를 불법집회로 보아 광장 주변에서 집회장소를 차단하려던 의경들과 대치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마치 의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대치하고 있던 의경들이 십여 명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좌우나 뒤쪽으로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좌우로 조금만 돌아갔더라면 충분히 도로를 건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기사는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함께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는바, 당시 원고로서는 내심 경찰을 폭행할 의

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환으로 사진에 포착된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사나 함께 게재된 이 사건 사진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보도하고자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시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초상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

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건 당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준비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이 광장 일부를 차단하자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던 다른 시민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마치 주먹을 쥐고 앞에 대치한 경찰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자세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야 어떠한 간에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에는 원고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왜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소한도 경찰을 때릴 듯이 위협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집회 등의 참가자의 행위는 당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진이 특별히 원고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촬영·보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2] 각 생략 - 편집자 주

판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요구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 모 씨가 다음커뮤니케이션 블로그에 게시한 자신의 글에 대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는 행정청에 해당하여 기관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으로부터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과 관련한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심의한 후, 게시글이 ‘불법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간 독립기구의 성격으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구성원과 조직의 성격상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 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가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시정요구는 위법하다”며 시정요구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사 건 : 2009구합35924 시정요구처분취소
 원 고 : 최○○
 피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변 론 종 결 : 2010. 1. 14.

판 결 선 고 : 2010. 2. 11.

주 문 : 1. 피고가 2009. 4. 24.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글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http://blog.daum.net/○○○○>, 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에 국내산 시멘트에 관하여 별지 게시글의 제목 및 주요 내용란의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심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법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4. 24. 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23. 이 사건 게시글의 기각이유란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당초에는 “쓰레기 발암시멘트, 과연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게시글도 함께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위 게시글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9. 9.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시정요구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4,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요구의 처분성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피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행

정청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피고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법 제26조 제4항). 그리고 국가로부터 피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된다(법 제28조, 제29조). 이는 종래 피고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1. 26. 법률 제 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법 제21조 제4호,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3)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6항),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 물론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있게 되면 위 제재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9. 4. 28.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 제재처분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위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3.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점토질, 규산질, 산화철이 필요한데,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등지에서 위 주원료 및 부원료

의 주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석탄재, 비철금속, 슬래그 등 일부 재활용 자원이 새로운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고,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도 유연탄 대신 폐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 2005. 3.경 한국방송공사(KBS)의 ‘환경스페셜’이란 프로그램에서, 국제암연구회, 국립보건원, 환경보호협회 등이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구카톨릭대학의 산업보건학과 허용, 윤충식 교수가 “발암물질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콘크리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방영된 이후 국산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목사이자 환경운동가로서 2006년경부터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하여 왔는데, 이 사건 블로그에는 2006. 12. 25.부터 “발암시멘트가 무죄라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여 2008. 12. 9.까지 이 사건 게시글을 포함하여 58건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환경운동으로 원고는 2008. 4. 20. ○○○○ 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환경운동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8. 4. 3. 실시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 시험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국산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다량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산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납과 카드뮴 등의 인체 유해 중금속도 국내 시멘트 제품보다 현저히 낮았다’라는 내용 등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5)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2007. 11.부터 2008. 4.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산 시멘트의 6가크롬 함량은 자율관

리기준 이내이지만 일본·중국산에 비하여 약 30% 정도 높게 검출되었고 기타 6개 중금속(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총크롬)의 함량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6) 원고는 폐유를 정제하는 회사의 지정폐기물을 담아 운반 중인 차량을 영동고속도로 장평 톨게이트 근처(강릉 55km 전방)에서부터 대관령을 넘어가기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을 촬영하여 그 영상과 함께 “어떤 유독성 지정폐기물을 실은 것일까요? 화학공장에서 나온 알 수도 없는 지정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독물질이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고 시멘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별지 게시글 순번 3번)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그 차량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7) 원고는 2008. 10. 6. 환경부 등을 피감사기관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인으로 출석하여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9. 1. 12.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 부실과 폐기물 반입감 독소홀 관련 감사청구안’을 통과시켰는데, 감사청구 제안이유에서 시멘트제품에 대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국산 시멘트에서 6가 크롬이 중국·일본 등 외국산 시멘트보다 50배 까지 높게 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토피 및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30ppm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1,400ppm까지 나오는 등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

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예비조사 및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실지 감사를 통하여 2009. 6. 11. ‘중금속배출기준의 설정,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수입폐기물 관리의 개선, 시멘트공장 주변의 환경관리 강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18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 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

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의도로 몇몇 연구소들에 국내외 시멘트 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게시글(특히 2007. 10. 31.에 게시된 별지 목록 게시글 순번 1번)을 게시한 점, ② 설령 별지 목록 게시글 순번 3번에 삽입된 사진에 등장하는 특정차량이 시멘트 공장으로 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폐기물 등이 시멘트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원고가 사진을 삽입한 이유는 단지 본문의 내용을 좀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진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게시글 순번 3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6가크롬 및 6개 중금속의 함량이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한 민·관합동조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계속하여 '발암 시멘트, 쓰레기시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시멘트의 유해성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 및 대책수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요구는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시글, 관계 법령] 각 생략 - 편집자 주